

(주)소룩스 수요예측 참가 안내

※ (주)소룩스 수요예측 참여기관 주의사항

- 금번 수요예측은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만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증권신고서 및 수요예측 참여안내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후 수요예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으로 수요예측 접수 시, 접수서류의 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예측 접수서류 누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요예측 접수서류를 당사에 송부하신 기관투자자 담당자께서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당사 수요예측 접수 담당자(연락처 아래 참고)에 유선상으로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투자일임회사,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코넥스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본 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뿐만 아니라 별도의 약약서 및 펀드별 총괄집계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오니, 당사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선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누락된 수요예측 접수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에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내기관 수요예측 담당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IPO1 팀	김형준 차장	02-3774-7165
	조윤재 차장	02-3774-3967
	정성호 대리	02-3774-7197

[해외기관 수요예측 담당자]

부서	담당자	연락처
One-Asia Equity Sales 팀	이선민 매니저 김재근 선임매니저	02) 3774 - 3797 / 3785 orders@miraeasset.com

(주)소룩스 수요예측 참가 안내

미래에셋대우(주)를 대표주관회사로 2020년 10월 29일(목) ~ 2020년 10월 30일(금) 코스닥시장 공모 청약 예정인 (주)소룩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1,973,670 주의 공모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을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예측을 실시하오니 기관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접수일시 및 장소

- 1) 접수기간 : 2020년 10월 23일(금) ~ 2020년 10월 26일(월) 17시까지
- 2) 접수방법
 - 국내기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선, 인터넷 접수 불가시 서면접수
 - **해외기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우선, 인터넷 접수 불가시 서면접수**
- 3)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길 26(미래에셋센터원빌딩) 동관 35층 IPO 1팀
- 4) 문의전화 : 02) 3774 - 7197, 3967, 7165 (국내기관)
02) 3774 - 3797, 3785 (해외기관)

※ 수요예측 마감시간 (2020년 10월 26일 17시,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의 경우에는 접수완료 기준,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의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주) 도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분은 무효 처리되며, 우편접수로 인한 문제 발생(도착의 지연, 누락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규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3. 방법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방식

4. 수요예측 참가자격

▣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공모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제 1 호부터 제 10 호(제 8 호의 경우 법 제 8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 13 호부터 제 17 호까지, 제 3 항제 3 호, 제 10 호부터 제 13 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법 제 182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 249 조의 6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법 제 8 조 제 6 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법 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 3-4 조제 1 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 조의 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제 2 호의 4, 제 99 조제 2 항제 2 호의 4, 제 109 조제 1 항제 2 호의 4 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

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 제 335 조의 3 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 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신용등급이 BBB+ 이하(「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법 시행령 제 11 조 제 2 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5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1.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 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 제 1 호 및 같은 조 제 7 항에도 불구하고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파악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말합니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이고, 해당 투자신탁 등의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평균보유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9 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파악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제 1 항제 2 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 28636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 251 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 3 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 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 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 분의 50 및 100 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 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 제 20 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제 1 항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 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20 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공모주식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 조 제 4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2 조제 20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 년 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을 것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18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 1 호 및 제 4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 조 제 4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 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 억원이상일 것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2 항에 따라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같은 조 제 1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의 2 제 3 항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3 항 및 제 4 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발생일로부터 6 개월 내지 24 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가제외대상

-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 9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 2 조제 9 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함)
- ③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
- ⑤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부터 과거 1 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2017 년 1 월 1 일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
- ⑥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로부터 동 협회 정관 제 41 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해당 종목에 대하여 법 제 180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매도와 동일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 및 <별표 1>에서 같다)하는 경우.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 11 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가 제 5 조의 2 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 1호부터 제 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⑦ 금번 공모 시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 제 1항 제 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은 금번 수요예측 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수요예측참여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합니다.

- ①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 ②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약속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자
- ③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자
- ④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한 자
- ⑤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조의 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
- ⑥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케 한 자로서 제 1호 내지 제 5호에 준하는 자

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등록 및 게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관리대장에 기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17 조의 2 제 2 항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대표주관회사로부터 통보 받은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명단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이후 상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유로 인하여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된 기관투자자는 1년 기간 동안 미래에셋대우(주)가 대표주관회사로 실시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를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금지됩니다.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 17 조의 2 제 1 항제 6 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 17 조의 2 제 1 항 제 5 호 및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주 1)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주 2)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이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 3) 가중: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 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 감면: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할수 있음

주 5) 제재금 산정기준

1) MAX[수요예측 등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이익] (100만원 미만 경제적이익은 절사)

2) 불성실 수요예측 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증가 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증가기준 평가손익 X (-1)

의무보유 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 등 정보 허위 작성, 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 11 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확약종료일 종가: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 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5.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1) 대상주식 및 수량 : (주)소룩스 기명식 보통주

구 분	주식수	비 율	비 고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1,578,936 주	80.0%	-

주) 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1,973,670 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2) 공모희망가액 : 주당 8,000 원 ~ 10,000 원 (액면가 100 원)

3) 수요예측 참가 최저한도 및 최고한도

구 분		내 용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최고한도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 (신청수량 × 신청가액) ※ 단, 수요예측 대상수량 1,578,936 주를 초과할 수 없음
	최저한도	1,000 주

주 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 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기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 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최고한도는 수요예측 대상수량 1,578,936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2) 금번 수요예측에는 의무보유기간에 대해 15 일, 1 개월, 3 개월, 6 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	내 용
수량단위	1,000 주
가격단위	100 원

주)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격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 표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제출서류

[국내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국내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20 년 10 월 26 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주)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해외기관투자자]

금번 수요예측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서면,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면서류의 제출방법은 인편(직접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우편은 수요예측 마감시각(한국시간 기준 2020 년 10 월 26 일 17:00)까지 도착분에 대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 및 서면 접수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미래에셋대우(주)의 계좌를 보유하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 ① 홈페이지 접속: 'www.miraeassetdaewoo.com' 접속 → बैं킹/대출/청약 → 청약 →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
- 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투자등록번호(IRC), 미래에셋대우(주) 위탁계좌번호 및 동계좌의 비밀번호 입력 (단, 배정받을 시 해당 주식의 입고를 희망하는 계좌번호로 Log in 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참여기관 기본정보 입력 후 수요예측 참여
- ④ 법 제 8 조 제 7 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 19 호, 20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요예측 참여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4 항에 따라 자신의 고유재산과 그 외의 재산(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 ⑥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에, 제 19 호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20 호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⑦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 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 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전체 물량(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 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수요예측 복수가격 참여 방법]

금융투자협회 제정 『대표주관업무모범기준』-『3 부.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3. 수요예측 실시』에 따라 금번 수요예측 시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가격으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을 접수하는 미래에셋대우(주)는 각 수요예측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참여 가격을 최대 2 개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각 참여가격에 대한 참여수량의 총합은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인 1,578,936 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 ㉠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미래에셋대우(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 비밀번호 5 회 입력 오류 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미래에셋대우(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 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계좌로 참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참여내역을 각각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통합분,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통합분, 벤처기업투자신탁 통합분을 각각 구분).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 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해서 각각 1 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 건 통합배정,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1 건 통합배정, 벤처기업투자신탁 1 건 통합배정).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 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 파일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18 호, 19 호, 20 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서류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주) 관련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확인"버튼을 눌러야 수요예측 신청이 마감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접수방법(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구 분	내 용
공 통 서 류	- 수요예측참여신청서(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 가 서 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상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집합투자회사 (집합투자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자일임회사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투자일임회사 약약서 ※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한하여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투자일임재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제출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제출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코넥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용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확약서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벤처기업투자신탁용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소정양식) - 벤처기업투자신탁 확약서 -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이나 정보
-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3-12 조 제 1 항 1 호 내지 2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 제 8 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2 조제 8 호 사목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또는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유의사항

- 1) 수요예측 접수는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를 통한 인터넷 접수로 진행합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의 접수분은 무효처리 되며 우편접수로 인한 문제 발생(도착의 지연, 누락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수요예측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참여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가 배포한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날인이 없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주)를 통하여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인터넷 접수 및 오프라인 접수 대상자 모두)는 수요예측참가신청서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미래에셋대우(주) 위탁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동 계좌가 없을 경우 수요예측 참여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의 접수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요예측 참여기간 중에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진행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 5 조 제 6 항에 의거하여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과 관련한 수요예측 참여정보는 공지하지 않습니다.

- 4) 자산운용회사(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며, 해당펀드의 소속금융기관 명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 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신청서 상에 본인명의 당사 위탁계좌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수요예측 참여 전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 6) 참가신청수량이 각 수요예측 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7) 신탁형펀드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하며,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가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경우, 당해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1 개의 수요예측 참가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8)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수요예측신청서에는 신청가격과 신청수량을 문자와 숫자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문자와 숫자가 상이할 때에는 문자로 제시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9) 수요예측 참여시 각각의 해당되는 제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기의 제출서류를 미비 또는 누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 10) 수요예측에 참가 시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거나,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불성실수요예측 참여행위)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기구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회사는 물론 동 기관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 11) 수요예측 참여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참여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 12)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13)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4) 기존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미래에셋대우(☎) One-Asia Equity Sales 팀을 통한 서면 접수를 통해 수요예측을 참가 하였으나 2018 년 10 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수요예측 참여방법이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5) 기타 유의사항은 증권신고서 內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공모가액 결정방법

공모가격은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와 (주)소록스가 협의한 후 합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9. 수량배정방법 및 수요예측 결과 통보

- 1) 상기와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의무보유확약기간,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 물량을 결정합니다.
- 2)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대우(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미래에셋대우(주) 홈페이지(www.miraeassetdaewoo.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미래에셋대우(주) 「www.miraeassetdaewoo.com ⇒ 온라인지점/뱅킹 ⇒ 청약 ⇒ 수요예측 ⇒ 배정결과 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같음합니다.

10. 청약 및 납입 관련 유의사항

- 1) 청약기간 : 2020년 10월 29일(목) ~ 10월 30일(금)
- 2) 납입일 : 2020년 11월 2일(월)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10월 29일(목)과 10월 30일(금) 08:00 ~ 16:00(한국시간 기준)에 미래에셋대우(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을 0%)를 작성하여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0년 11월 2일(월) 08:00 ~ 13: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미래에셋대우(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기관투자자 청약의 경우 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납입일에 입금해야 합니다.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공통사항)

- 청약일(2020년 10월 29일(목)과 10월 30일(금))에 청약한 주식에 대해 납입일(2020년 11월 2일(월)) 13시까지 납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대한 납입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